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자연공원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환경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공원관리청이 공원계획 및 공원구역 변경안을 마련하는 초기 단계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공원관리청이 공원계획과 공원구역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명시하는 한편,

국유림 또는 공유림이 국립공원에 신규 편입된 경우 해당 국유림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당 공유림의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원관리청에 사전통보 후 산림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공원계획과 공원구역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.

제19조제1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1.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를 거쳐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국립공원에 편입된 국유림 또는 공유림에서 해당 국유림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당 공유림의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「산림자원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사업. 이 경우 공원관리청에 그 내용을 미리 알려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신고생략사항에 관한 적용례) 제19조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3일 이후 국립공원에 편입된 국유림 또는 공유림에 대해

적용한다.

제3조(공원계획에 대한 타당성검토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
전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공원계획과 공원구역에 대한 타당성 검토
에 착수한 경우에는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
정에 따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2조(공원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기준) ①·② (생략)	제12조(공원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기준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<u><신설></u>	<u>③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공원 계획과 공원구역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.</u>
제19조(신고생략사항) ①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를 생략하고 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.	제19조(신고생략사항) ①----- ----- -----.
1. ~ 10. (생략)	1. ~ 10. (현행과 같음)
<u><신설></u>	<u>11.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를 거쳐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국립공원에 편입된 국유림 또는 공유림에서 해당 국유림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당 공유림의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「산림자원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사업. 이 경우 공원관리청에 그 내용을 미리 알려야 한다.</u>
<u>11.</u> (생략)	<u>12.</u> (현행 제11호와 같음)
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---------	---------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환경부 자연공원과	
연 락 처	(044) 201 - 7326